

#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보호

**2025년 9월 25일**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MBA)**

**호텔나루서울 앰갤러리1,2 (2층)**

# 강사소개



## 최승재

[lawntech1@naver.com](mailto:lawntech1@naver.com)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법학)
- LL.M(미국ColumbiaUniversity로스쿨), MBA
- 변호사, 변리사
- 현 한국특허법학회부회장, 한국과학기술법학회부회장,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부회장, 한국세법학회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금융위원회법령해석위원회등
- 전 대법원재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 금융위원회골프장,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인공지능과경쟁법>(2025), <인공지능의역사>, <저작권법>(2024), <미국특허법>(2023, 2020, 2011)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음악저작권침해>(2022), <개인정보>(2016), <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2010), <금융거래법>(2016),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상사중재법>(2018)등 15권이상의단독저서와40권이상의공동저민 100여편이상의논문

# CHOI SUNG-JAI

---

- Prof. Sung-jai CHOI primarily researches intellectual property law—including patent and copyright law—as well as competition law. He is also dedicated to training outstanding legal professionals in the faculty of law at Sejo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Columbia Law School(LL.M) in the United States. He also completed an MBA to further his studies in finance and accounting, in addition to his legal education. In 2021, he was honored with the Korea Arbitration Grand Prize(Next Generation Leader Award).

# CHOI SUNG-JAI

## (PRACTICE AS A LAWYER AND SCHOLAR)

---

- As a lawyer and patent attorney, he successfully represented a number of cases including Qualcomm vs KFTC(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ase representing KFTC in securing all fines against Qualcomm, handle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in the UK, and worked on Samsung vs Apple case representing Apple and on Microsoft vs KFTC representing Microsoft as a in house counsel.
- He completed the 29th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he served as an expert appraiser for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 judicial research officer at the Supreme Court, a Non-Standing Commissioner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s Legal Research Institute, a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 board Member of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a arbitrator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Vice Chairman of the Korea Patent Law Society, and has practiced as a lawyer at Kim & Chang, ClassHankyul, Samsung and Microsoft, etc.

# CHOI SUNG-JAI

## (BOOKS AND PUBLICATIONS)

---

- He has written more than 14 books, including "A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2024), "Standard Essential Patents and Laws" (2021), "U.S. Patent Law" (2011), "Regulating the Patent Abuse by Competition law" (2010), "A Study on the Attorney Client Privilege"(2013), "Copyright Infringement in Music Industry" (2015), "Personal Information" (2016), "New Terrain of Design Protection, Copyright and Trademark" (2016), "Financial Transactions Law" (2016), "Stories on Attorney" (2014), "The Story of the U.S. Supreme Court Justice" (2010), "Competitive Strategy and Law" (2009), "Strategic Corporate Management and Law"(2010).
- He also has co-authored "Copyright Law" (2024, 2 authors), "The Structure and Logic of Response to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s" (2022, 3 authors), "New U.S. Patent Law" (2020, 2023, 3 authors), "Commentary on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2015), "Trade Secret Protection Act" (2017), "Patent Case Studies" (2009, 2012, and 2017), "U.S. Patent Case Studies, Volumes I & II" (2013, 2017), "Annotation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2015), and numerous other public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 최승재 교수의 관련 저서들

이제는 인권을 개인정보라는 실용적인 정보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쟁에서 출발한다. 그 관점에서 서민정보는 사생활을 담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개인정보 보호를 계속 심화시키고 정보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다. 개인정보 제정에서부터 권리는 커져왔지만 그 만큼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중요하다. 실용정보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유효성이 제고되었다.

## 개인 정보

최승재



저승나눔연구소

제2판

## 신미국특허법

최승재 | 김기 | 박영사

최승재

제2개정판

## 상사중재법

최승재

최승재

## 표준필수특허와 법



최승재

박영사

## 인공지능의 역사

최승재



저승나눔연구소

## 음악저작권 침해 본질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최승재 | 김수영 | 이영호

저승나눔연구소

## 인공지능과 경쟁법

최승재

경쟁법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시장의 행위를 중심으로 설계된 경쟁법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통해 합법적인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해 현재의 경쟁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공지능 간 경쟁이 이루어져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경쟁 우위를 장악하고자 하면 경쟁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책은 시대 인공지능이 경쟁법에 부여하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저승나눔연구소

## 인공지능과 저작권

최승재

창작은 인간이 할 일이다. 창작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지능을 표시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원론적 질문이 발생한다. 창작 권법은 인간의 창작을 영위해 두지만, 창작이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몫이다. 인공지능 창작은 문화적인 특성의 침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음악, 영상, 미술, 게임 등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여러 산업에서의 저작권법 관련 주제를 살펴본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취급 경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저승나눔연구소

## 저작권법

최승재 | 김기 | 박영사

최승재

---

**지브리, NYTIMES**  
**AND**

Part 1.

# "지브리풍으로 그려줘!"...국내 챗GPT 이용자 역대 최다

선담은 기자

수정 2025-04-02 07:13 등록 2025-04-01 17:05

🔊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09 ▶ 🔊



오픈에이아이(AI)의 챗지피티(ChatGPT)-포오(4o)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로 구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이 이미지는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레딧 갈무리

샘 올트먼 오픈에이아이 최고경영자(CEO) 역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챗지피티가 생성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바꿔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브리 등의 그림체를 학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까지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챗지피티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의 선풍적 인기에 대해 "많은 이들이 챗지피티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건 즐겁지만, 우리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녹아내리고 있다"며 서버 과부하를 우려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mailto:sun@hani.co.kr)



# 스타일 학습

- 오픈 AI가 일본에 법인을 만들고 지브리를 학습시킨 후 지브리 스타일로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Cha GPT 4o를 출시한 결과:
- 5억 명의 사용자 증가/그 가치의 정당한 분배는?

경제 경제일반

## '지브리 프사'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CULTURE & BIZ

수정 2025-06-07 10:58 등록 2025-06-07 09:00

🔊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10:26 ▶ 🔊



최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애니메이션 '회풍'으로 사진을 바꾸는 일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이미지. 샘 올트먼 X

지브리 선드롬과 AI



심지어 전쟁 현장까지 가서 취재하고

## IDEA v. Expression Dichotomy

Korean Broadcasting System(KBS)

Q. 그럼 마구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몇십년간 쌓아온 스타일을 보호받을 수 없다니...

“우리나라 한정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성과를 가져다가 베끼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 법에는 ‘타인의 성과를 모용(冒用)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데요. 오픈AI 챗GPT가 스칼릿 요한슨의 목소리를 학습했다는 의혹을 받았잖아요. 요한슨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학습해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유명인의 목소리, 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 AI 이미지, 보이스로 쓴다면 퍼블리시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브리풍 AI 사진? 한국서는 불법 될 수도” \[형테크\]](#)

조선경제 > 테크

## "지브리풍 AI 사진? 한국서는 불법 될 수도" [형테크]

장형태 기자

업데이트 2025.04.10. 10:29 ▾

🔊 가 🗨



/조선일보 테크 유튜브브 캡처

국제

#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 1. 개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프롬프트에 특정인의 스타일을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모달(multi-modal)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다양한 결과물<sup>1)</sup>을 내고 있다. 멀티모달 생성형

## 1) 스타일은 '아이디어'인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예를 들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보이는 역동적인 스타일로 서울의 거리를 그려달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고흐 그림의 특징'을 보여 주는 느낌이 드는 그림 이미지를 제시한다. 원래 이런 풍(風)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따른 결론이라고 보인다. 우리 법원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인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sup>4)</sup> 기존 판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 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는 아이디어라고 보거나,<sup>5)</sup>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학술적, 이론적 내용,<sup>6)</sup>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sup>7)</sup> 등도 법원이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

## (2)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성과모용행위'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특정 화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구축한 스타일의 무단 사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칫 실제 일반인들이 그 작곡가나 화가의 그림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모용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도 되는가하는 점에 대한 다른 질문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sup>16)</sup>과 관련하여 제기 가능하다. 이는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으로 우리 법 특유의 쟁점이다.

이는 2013년 7월 30일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성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타일을 성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Have you applied yet?

Get the best education possible. The U of A offers multiple programs ranked in the global top 15.

## [기고] 뉴욕타임스의 오픈AI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80% 기사라는 분석 있어  
오픈AI 상업적 성공 이유는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

# 뉴욕타임즈 기사

- 소송경과: 2023. 12. 27. 뉴욕타임즈는 인공지능(이하 "AI"라고 함) 학습에 자사의 저작물(기사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OpenAI는 ChatGPT를 통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알파고 이후 게임의 상대 정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AI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회사임.
- 뉴욕타임즈 기사의 비중 소장에 따르면 생성형 AI 학습에 있어서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큼. ChatGPT-4와 뉴욕타임즈 기사를 대비한 예제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저작권 동향 2024 제1호

[미국] 뉴욕타임즈, AI 학습에 자사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NY times v. OpenAI, MS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 뉴욕타임즈 기사의 특징

- **전문성**

- 1851년 설립된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있음. 변호사가 작성하는 법률 기사나 의사가 작성하는 의학 기사와 같은 심층보도의 경우에도 매우 질이 높음. 그 결과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거의 200년 동안 수준 높은 내용을 가진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많은 비용이 소요됨**

-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돈, 전문가들과 이를 지원하는 뉴스룸의 인력과 기술지원이 필요함.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800명의 정규직 인력들이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고 있음.

# NYTIMES VS OPENAI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THE NEW YORK TIMES COMPANY

Plaintiff,

v.

MICROSOFT CORPORATION, OPENAI, INC.,  
OPENAI LP, OPENAI GP, LLC, OPENAI, LLC,  
OPENAI OPCO LLC, OPENAI GLOBAL LLC,  
OAI CORPORATION, LLC, and OPENAI  
HOLDINGS, LLC,

Defendants.

Civil Action No. \_\_\_\_\_

**COMPLAINT**

**JURY TRIAL DEMANDED**

Plaintiff The New York Times Company (“The Times”), by its attorneys Susman Godfrey LLP and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 for its complaint against Defendants Microsoft Corporation (“Microsoft”) and OpenAI, Inc., OpenAI LP, OpenAI GP LLC, OpenAI LLC, OpenAI OpCo LLC, OpenAI Global LLC, OAI Corporation, LLC, OpenAI Holdings, LLC, (collectively “OpenAI” and, with Microsoft, “Defendants”), alleges as follows:

# NYTIMES VS. OPENAI



## Output from GPT-4:

exempted it from regulations, subsidized its operations and promoted its practices, records and interviews showed.

Their actions turned one of the best-known symbols of New York — its yellow cabs — into a financial trap for thousands of immigrant drivers. More than 950 have filed for bankruptcy, according to a Times analysis of court records, and many more struggle to stay afloat.

“Nobody wanted to upset the industry,” said David Klahr, who from 2007 to 2016 held several management posts at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he city agency that oversees medallions. “Nobody wanted to kill the golden goose.”

New York City in particular failed the taxi industry, The Times found. Two former mayors, Rudolph W. Giuliani and Michael R. Bloomberg, placed political allies inside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and directed it to sell medallions to help them balance budgets and fund key initiatives.

During that period, much like in the mortgage lending crisis, a group of industry leaders enriched themselves by artificially inflating medallion prices. They encouraged medallion buyers to borrow as much as possible and ensured them in interest-only loans and other one-sided deals that often required borrowers to pay hefty fees, forfeit their legal rights and give up most of their monthly incomes.

When the market collapsed, the government largely abandoned the drivers who bore the brunt of the crisis. Officials did not bail out borrowers or persuade banks to soften loan

## Actual text from NYTimes:

exempted it from regulations, subsidized its operations and promoted its practices, records and interviews showed.

Their actions turned one of the best-known symbols of New York — its signature yellow cabs — into a financial trap for thousands of immigrant drivers. More than 950 have filed for bankruptcy, according to a Times analysis of court records, and many more struggle to stay afloat.

“Nobody wanted to upset the industry,” said David Klahr, who from 2007 to 2016 held several management posts at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the city agency that oversees cabs. “Nobody wanted to kill the golden goose.”

New York City in particular failed the taxi industry, The Times found. Two former mayors, Rudolph W. Giuliani and Michael R. Bloomberg, placed political allies inside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and directed it to sell medallions to help them balance budgets and fund priorities. Mayor Bill de Blasio continued the policies.

Under Mr. Bloomberg and Mr. de Blasio, the city made more than \$855 million by selling taxi medallions and collecting taxes on private sales, according to the city.

But during that period, much like in the mortgage lending crisis, a group of industry leaders enriched themselves by artificially inflating medallion prices. They encouraged medallion buyers to borrow as much as possible and ensured them in interest-only loans and other one-sided deals that often required them to pay hefty fees, forfeit their legal rights and give up most of their monthly incomes.

# NYTIMES VS. OPENAI

## Output from GPT-4:

many of America's other global companies — aren't nearly as avid in creating American jobs as other famous companies were in their heydays.

Apple employs 43,000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20,000 overseas, a small fraction of the over 400,000 American workers at General Motors in the 1950s, or the hundreds of thousands at General Electric in the 1980s. Many more people work for Apple's contractors: an additional 700,000 people engineer, build and assemble iPads, iPhones and Apple's other products. But almost none of them work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they work for foreign companies in Asia, Europe and elsewhere, at factories that almost all electronics designers rely upon to build their wares.

"Apple's an example of why it's so hard to create middle-class jobs in the U.S. now," said Jared Bernstein, who until last year was an economic adviser to the White House. "If it's the pinnacle of capitalism, we should be worried."

Apple executives say that going overseas, at this point, is their only option. One former executive described how the company relied upon a Chinese factory to revamp iPhone manufacturing just weeks before the device was due on shelves. Apple had redesigned the iPhone's screen at the last minute, forcing an assembly line overhaul. New screens began arriving at the plant near midnight. A foreman immediately roused 8,000 workers inside

## Actual text from NYTimes:

many of its high-technology peers — are not nearly as avid in creating American jobs as other famous companies were in their heydays.

Apple employs 43,000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20,000 overseas, a small fraction of the over 400,000 American workers at General Motors in the 1950s, or the hundreds of thousands at General Electric in the 1980s. Many more people work for Apple's contractors: an additional 700,000 people engineer, build and assemble iPads, iPhones and Apple's other products. But almost none of them work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they work for foreign companies in Asia, Europe and elsewhere, at factories that almost all electronics designers rely upon to build their wares.

"Apple's an example of why it's so hard to create middle-class jobs in the U.S. now," said Jared Bernstein, who until last year was an economic adviser to the White House.

"If it's the pinnacle of capitalism, we should be worried."

Apple executives say that going overseas, at this point, is their only option. One former executive described how the company relied upon a Chinese factory to revamp iPhone manufacturing just weeks before the device was due on shelves. Apple had redesigned the iPhone's screen at the last minute, forcing an assembly line overhaul. New screens began arriving at the plant near midnight.

## Output from GPT-4:

many of America's other global companies — aren't nearly as avid in creating American jobs as other famous companies were in their heydays.

Apple employs 43,000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20,000 overseas, a small fraction of the over 400,000 American workers at General Motors in the 1950s, or the hundreds of thousands at General Electric in the 1980s. Many more people work for Apple's contractors: an additional 700,000 people engineer, build and assemble iPads, iPhones and Apple's other products. But almost none of them work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they work for foreign companies in Asia, Europe and elsewhere, at factories that almost all electronics designers rely upon to build their wares.

"Apple's an example of why it's so hard to create middle-class jobs in the U.S. now," said Jared Bernstein, who until last year was an economic adviser to the White House. "If it's the pinnacle of capitalism, we should be worried."

Apple executives say that going overseas, at this point, is their only option. One former executive described how the company relied upon a Chinese factory to revamp iPhone manufacturing just weeks before the device was due on shelves. Apple had redesigned the iPhone's screen at the last minute, forcing an assembly line overhaul. New screens began arriving at the plant near midnight. A foreman immediately roused 8,000 workers inside

## Actual text from NYTimes:

many of its high-technology peers — are not nearly as avid in creating American jobs as other famous companies were in their heydays.

Apple employs 43,000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20,000 overseas, a small fraction of the over 400,000 American workers at General Motors in the 1950s, or the hundreds of thousands at General Electric in the 1980s. Many more people work for Apple's contractors: an additional 700,000 people engineer, build and assemble iPads, iPhones and Apple's other products. But almost none of them work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they work for foreign companies in Asia, Europe and elsewhere, at factories that almost all electronics designers rely upon to build their wares.

"Apple's an example of why it's so hard to create middle-class jobs in the U.S. now," said Jared Bernstein, who until last year was an economic adviser to the White House.

"If it's the pinnacle of capitalism, we should be worried."

Apple executives say that going overseas, at this point, is their only option. One former executive described how the company relied upon a Chinese factory to revamp iPhone manufacturing just weeks before the device was due on shelves. Apple had redesigned the iPhone's screen at the last minute, forcing an assembly line overhaul. New screens began arriving at the plant near midnight.

# GETTY IMAGE V STABILITY AI

- Getty Images, one of the power players in the stock-image market, is suing the owner of AI art tool Stable Diffus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a case that could help determine the limits of what AI art can legally generate.
- As [unearthed by The Verge](#), Getty is suing Stability AI, maker of Stable Diffusion, in a London court, claiming that Stability AI infringed the rights of copyright owned or represented by Getty Images. “Getty Images’ position that Stability AI unlawfully copied and processed millions of images protected by copyright and the associated metadata owned or represented by Getty Images absent a license to benefit Stability AI’s commercial interests and to the detriment of the content creators,”
- [Getty sues Stable Diffusion. The future of AI art could be at stake](#) PCWorld 23. 2. 6.



nan / IDG via Stability AI



##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보상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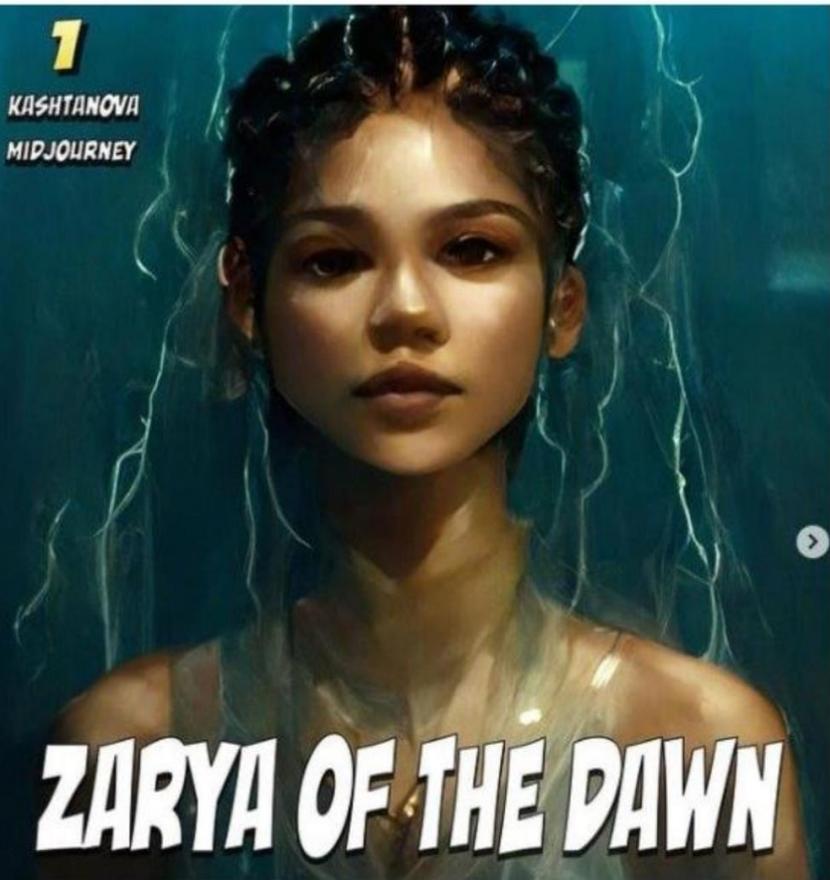
게티의 사진저작물이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 문제



Paart 2

새벽의 자리야, 천국을 향한  
새로운 입구, 할리우드, 스  
칼렛 요한슨, 마블, 그리고

1

KASHITANOVA  
MIDJOURNEY

ZARYA OF THE DAWN

AI 일러스트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 (인스타그램 '크리스 카쉬타노바' 갈무리)

# <새벽의 자리야> BY 미드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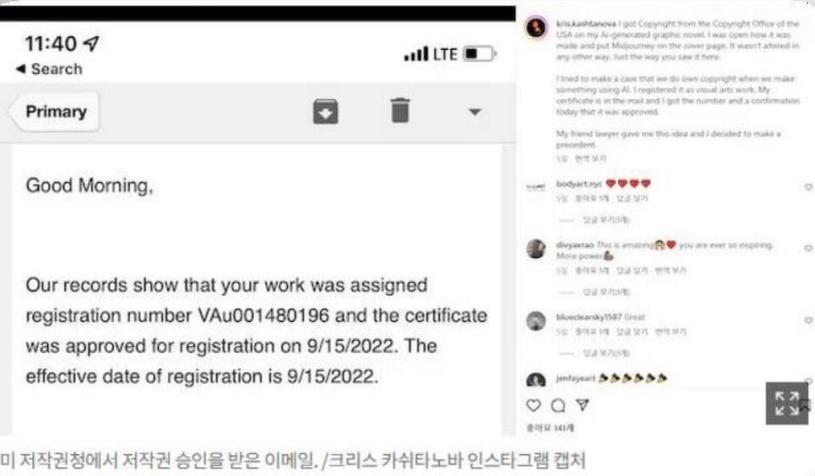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저작권청(USCO)은 서한을 통해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작가의 산물이 아니므로 만화 '새벽의 자리야'의 미국 내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 미 규제 당국이 구체적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작가 크리스 카쉬타노바는 AI 일러스트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 '새벽의 자리야'를 저작권청에 등록했다. 미국에 선 저작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카쉬타노바는 자신 이 모든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이날 저작권청은 "미드저니의 사용자 카쉬타노바는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로 형성하지 않았다"며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주체적 의지(master mind)를 지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구체적인 산출물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다른 도구와 미드저니 사이에 엄연한 차이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을 결정한 사람'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출처 : AI라이프경제(<http://www.aifnlife.co.kr>)

# <새벽의 자리야> BY 미드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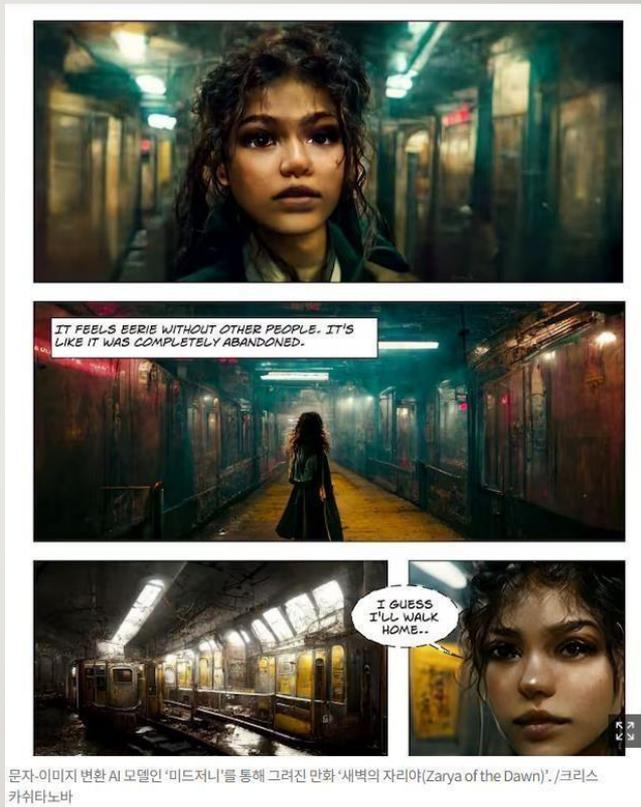
미 저작권청에서 저작권 승인을 받은 이메일. /크리스 카쉬타노바 인스타그램 캡처

- 미국의 한 예술가가 AI(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만화가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다.
- AI가 그린 작품이 미 저작권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미 콜로라도 주립 미술박물관에서 AI 이미지 생성기로 그린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1위를 차지하며 AI와 예술, 저작권에 대한 논란에 불이 지펴진 데 이어 AI가 그린 만화가 저작권을 인정받으면서 AI 예술 작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새벽의 자리야> BY 미드저니

- 컬러로 그려진 만화의 그림체는 화려하다. 아무도 없는 타임스퀘어, 폐허가 된 지하철역, 석양이 지는 도시의 마천루 등 그림 하나하나의 수준이 매우 높다. 이는 카쉬타 노바가 미드저니에 원하는 그림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하고, 미드저니가 그려준 것들이다. 카쉬타노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I로 무언가를 만들 때 작업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선례를 만들려고 했다”고 썼다.
- 그의 만화 표지 작가 이름이 적힌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미드저니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현재 미 저작권청은 AI의 저작권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경우에도 저작권은 카쉬타노바가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등록 됐다.
- 카쉬타노바가 AI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지만, 만화의 전체 스토리라인 만들고, 레이아웃을 그리고, 여러 이미지를 결합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행위만 인정한 것이다.

AI가 그린 이 만화, 저작권 인정받았다... 본격화되는 AI 작품 저작권 전쟁 / 조선일보 2022. 9. 27. 자



문자-이미지 변환 AI 모델인 '미드저니'를 통해 그려진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크리스 카쉬타노바



New Entrance to the  
Paradise

영상 > 최신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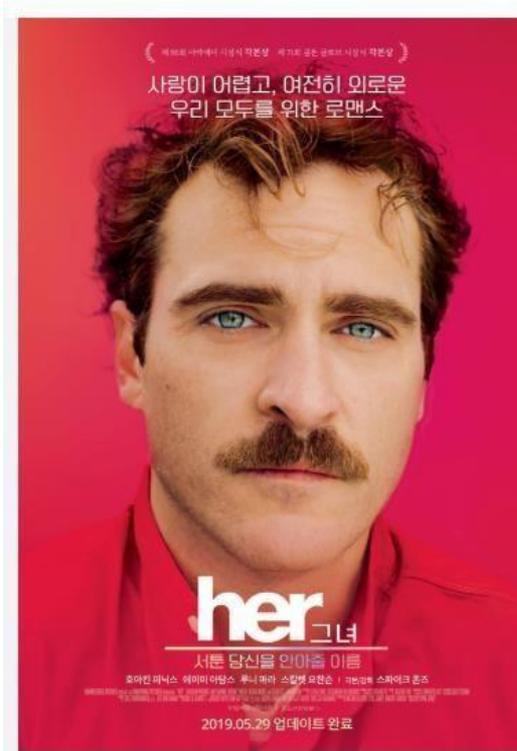
## AI에 반격하다...할리우드서 시작된 전쟁의 결과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송고 2023-08-26 22:00



AI에 반격하다...할리우드서 시작된 전쟁의 결과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목소리를 인공지능에 쓰다.



인사이트42

## 영화 'her'의 그 목소리? 스칼렛 요한슨의 법적 대응과 오픈AI가 벌인 어리석은 짓

류정민 기자 | 2024.05.23



[AI 요약] 지난주 오픈AI가 야심차게 공개한 챗GPT 4.0 음성버서 '스카이'가 잠정 중단이라는 결말을 맞이했다. 스카이는 공개되자마자 그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한 영화의 가상 음성 비서와 너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요한슨은 결국 오픈AI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스카이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환상에서 나온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안전 문화 프로세스가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칼렛 요한슨이 오픈AI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지=영화 '루시')

# 미국 AI 음성 복제물(Clones)에 대한 미국 법원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

국립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창화

## 1. 개요

2025년 7월 10일,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옷킨(Oetken) 판사는 인간의 음성에 대한 AI 기업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과 법적 구제에 대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음.<sup>1)</sup> 원고인 레르만(Lehrman)과 사지(Sage)(이하, '원고들')는 뉴욕에 거주하는 목소리 더빙(dubbing) 성우임. 2019년과 2020년, 그들은 프리랜서 플랫폼 Fiverr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들<sup>2)</sup>로부터 연구 목적으로 스크립트를 녹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원고들은 각각 1,200달러와 400달러의 보상을 받았으며, 그들의 음성이 내부의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개적으로 배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음. 하지만 AI 음성 생성과 텍스트-음성 변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Lovo(이하 '피고')가 그들의 녹음을 AI 음성 생성기인 Genny에 포함시켜 "Kyle Snow"와 "Sally Coleman"이라는 이름의 음성 복제물(clones)을 생성하였고, 합성된 음성은 오디오북, 광고, 팟캐스트 등의 상업적 용도로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되었음.

## 문화부의 대응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3대 콘텐츠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를 확대해 제작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관광 콘텐츠 혁신을 추진한다. 공유숙박 전면 제도화 추진, 숙박관리업 도입, 지역관광 교통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포츠 분야에선 AI 기반 '체력100' 사업과 스포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 연령층의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립예술단체 경영 체계를 전문화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 방식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5개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예술계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했다"며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 "터질 게 터졌다"...지상파 방송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제기

김보경 · 2025. 1. 13. 18:18

▽ ◀ ▶ ⌂

"하이퍼클로바X' 자사 기사 무단 학습"  
"허가없는 콘텐츠 이용 금지 의견 전달"  
"백테크에 손자 소송 제기...강력 대응"

지상파 방송 3사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NAVER)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기자협회보   기자상   기자연수   협회소개   협회활동

## 신문협, '뉴스 무단 이용' 네이버 공정위에 신고

24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mailto:sychoi@journalist.or.kr) 2025.04.24 16:11:01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무단 인공지능(AI) 학습 등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문협회가 신고서에서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무단 복제, 원문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해 언론사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Korea's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filed a copyright lawsuit against Naver, Tuesday, accusing the major Korean online platform of using their news content fo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raining without permission, according to the Korean Broadcasters Association.

In the lawsuit, KBS, MBC, and SBS claimed that Naver used the broadcasters' news articles for its AI platforms, HyperCLOVA and HyperCLOVA X, without permission, thereby infringing on their copyrights and violat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December 2023, the association sent notices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information technology (IT) companies, including Naver, Kakao, and Google Korea stating that "separate compensation consultations are required to use news content for AI learning" and that they are prohibited from using news content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irst.

Additionally, the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39 broadcasters, established an AI task force composed of legal and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 The Korea Times

South Korea > Society

# Broadcasters sue Naver for copyright violations



The appearance of the Naver headquarters in Bundang-gu, Seongnam. /Courtesy of News1



## PART 3. LEGAL ACCESS & DISCLOSURE FROM A HIGH LEVEL

#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2025.03.19 17:49:12



#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TDM)

[참고: 일본은 공정이용조항이 없음]

**제30조의4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그 밖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의 녹음, 녹화, 그 밖의 이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정보 분석(다수의 저작물, 그 밖에 대량의 정보로부터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소리, 영상, 그 밖의 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그 밖에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도 같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 2호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표현에 관한 사람의 지각에 의한 인식을 수반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이용, 그 밖의 이용(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실행을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경우

# EU TDM exception

## 제3조 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 (1) 회원국은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그들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복제하고 추출하는 것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제5조(a)와 제7조 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및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물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갖춰 저장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검증 등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유지할 수 있다.
- (3) 권리자들은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호스팅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 (4) 회원국은 권리자, 연구기관 그리고 문화유산기관이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언급된 의무와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합의된 최적 관행을 정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와 제한

- (1) 회원국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와 추출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조(a)와 제7조제1항,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항(a)와 (b)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과 추출물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필요한 한 보관될 수 있다.
- (3) 제1항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은 제1항에 언급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이 권리자에 의해,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중에게 이용 제공되는 경우에 기계가독형 수단 등,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4) 이 조항은 이 지침 제3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EU 유럽의회 법제위원회,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한효정 선임연구원

## 1. 개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법제위원회(JURI Committee)는 2025년 7월 9일, “생성형 AI와 저작권(Generative AI and copyright)<sup>1)</sup>”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보호받는 저작물을 생성형 AI 시스템의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및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집행위원회에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보고서는 AI 학습에 대해 EU CDSM 지침<sup>2)</sup>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sup>3)</sup> 예외 조항, AI 학습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및 보상, AI법과 투명성 의무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며, AI 결과물에 대해서는 AI 생성 결과물과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구분, 결과물에 관한 경제적 및 법적 과제,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책임 등을 검토하고, 정책 옵션 및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 EU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AI-저작권 관련 첫 선결적 판단 요청받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교수  
이일호

## 1. 사건의 배경

최근 인공지능 사업자에 의한 저작물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들의 결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음. 미국에서 WestLaw를 서비스하는 유명 법률출판사인 Thomson Reuters Enter.와 Ross Intelligence 사이 분쟁이 판단 단계에 이른 바 있고(제1심),<sup>1)</sup> 미국 작가들이 각각 Anthropic과 Meta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도 제1심 판단이 나온 바 있음.<sup>2)</sup> EU 회원국 중에서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관련 제1심 판결이 나왔음.<sup>3)</sup> 미국 법원들이 주로 공정이용으로 인공지능 학습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정당화의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면,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은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이하 DSM 지침)<sup>4)</sup>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허용 요건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EU는 일단 인공지능 학습이 TDM의 일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허락되는 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한 바 있음.

# 공정이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 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 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과 시사점 -

A Proposal of Standard to apply the Copyright Act 35-3 (Fair Use) - Analysing the US Court cases and its implication -

###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 학술저널

江原法學 제57권

2019.06 | 35 - 70 (36page)

DOI : 10.18215/kwlr.2019.57..35

###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 Supreme Court rules against Andy Warhol in copyright dispute over Prince portrait

By Ariane de Vogue, CNN Supreme Court Reporter

9 minute read · Updated 1:55 PM EDT, Thu May 18, 2023

CNN Politics SCOTUS Congress Facts First 2024 Elections



Supreme Court

## 앤디 워홀 판결

- 프린스 사진작가와 앤디워홀재단 간의 사건
- 공정이용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서 의미
- 변용적 이용/시장대체효과

#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Prince Photographer, Against Warhol, in Fair Use Copyright Case

May 22, 2023

*How Does the Landmark Decision – First in Last 30 Years on Fair Use – Affect Music, Entertainment, and Creative Industries?*

*Published in Westlaw Today*

It has been nearly 30 years sinc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ruled on fair use. On May 18, in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et. al*,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late pop artist Andy Warhol's silkscreen portraits of the late rock star Prince infringed on the copyright of the original photo taken by photographer Lynn

#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PRE-PUBLICATION VERS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MAY 2025

# AI AND COPYRIGHT [PART 3]

## 주요내용

---

학습용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보는 것이  
원칙(공정이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 Copying Can Occur During Training or Use of Generative AI, and the AI Model's "Weights" May Also Infringe

The Report begins by discussing how curating, collecting, downloading, reformatting, transferring, and incorporating copies into AI model training datasets can involve creating multiple copies of protected works. The Report notes that building a training dataset using copyrighted works “clearly implicate[s]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further notes that if model outputs are substantially similar to training sources, the output may also implicate a protected right. In these instances, the conduct is presumptively infringing unless the fair use defense applies.

What happens in the middle of the training process is a bit more nuanced, and the extent to which models memorize training examples is disputed (and likely varies across models). However, according to the Report, if the model can generate an identical or nearly identical copy of the underlying work without that expression being provided in the form of a prompt or input, there is a strong argument that the model's “weights” — numerical parameters that determine the importance of dataset features — could implicate the right of reproduction. Model weights that have memorized protectable expression from training data may also infringe the derivative work right.

The Report notes that whether a model's weights implicate the reproduction or derivative work rights turns on whether the model has retained or memorized “substantial protectable expression” from the underlying works. In such an

# 미국 디즈니와 유니버설,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남

## 1. 개요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2025년 6월 11일, 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로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Disney Enterprises, Inc.), 마블(Marvel Characters, Inc.), 루카스필름(Lucasfilm Ltd. LLC), 20세기 폭스(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등 디즈니 계열사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P), 드림웍스(DreamWorks Animation L.L.C.) 등 유니버설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음.

원고들은 미드저니가 아이언맨, 헐크, 슈렉, 미니언즈 등 자사의 유명 캐릭터들을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했으며, 사용자가 가다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들 캐릭터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미지를 생성한 소

# 미국 생성형 AI 음악기업 Suno와 Udio, 주요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협상 나서

변호사성원영 법률사무소

성원영

## 1. 분쟁 경과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 레코드와 같은 주요 음반사들은 2024년 7월경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의 학습(train)과 관련하여 두 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작함. 음반사들은 Suno 개발사인 Suno, Inc.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sup>1)</sup>, Udio 개발사인 Uncharted Labs, Inc.를 상대로 한 소송은 뉴욕 남부지방법원<sup>2)</sup>에 각각 제기함.<sup>3)</sup>

음반사들은 (i) 두 서비스가 원고의 음반저작물(sound recordings)<sup>4)</sup>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i) 두 서비스에게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청구하며, (iii)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Suno와 Udio는 2024년 8월 각각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들의 AI가 원고들의 음반저작물을 학습했다는

# 미국 Anthropic사의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한국저작권위원회

## 1. 개요

AI 언어모델(LLM) 개발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두고 저작자와 AI 기업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3일, Anthropic사가 대량의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한 사건<sup>1)</sup>에 대해서 공정이용 관련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림. 아래에서는

# 미국 Meta의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한국저작권위원회

## 1. 개요

2025년 6월 25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작가 Kadrey 등이 Meta를 상대로 해 소송에서 공정이용(fair use)을 인정하고 소를 기각했음<sup>1)</sup>. 이 결정은 같은 달 일부 Anthropic 사건에 이어 나온 것으로, AI 기업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과 관련한 미국 법원의 해석이 주목받고 있음

# 미국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미국 법원들의 공정이용 판단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승재

## 1. 개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면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sup>1)</sup>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를 상대로 방송 3사가 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 침해 문제는 법원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2025년 5월에는 이해민 국회의원실 주최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도 진행된 바 있음.<sup>2)</sup>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묘안(妙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저작재산권 면책 인부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현재 소송이 계속 중임.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둘러싼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같은 형태의 공정이용 조항을 기지그 워인 이트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미국 AI 학습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1:20-cv-00613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박한빈 책임연구원

## 1. 개요

###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률 AI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Ross Intelligence(이하 'Ross')가 Thomson Reuters(이하 'TR')의 법률 검색 플랫폼 Westlaw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AI 학습을 진행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임. TR은 Westlaw에서 제공하는 판례 요약(headnotes)과 Key Number

# TDM 면책(EXCLUSION/EXEMPTION)

## AI의 무단학습은 자유? 뜨거운 면책권 논쟁

김유태 기자 ink@mk.co.kr

입력 : 2024-03-22 17:10:22 수정 : 2024-03-22 19:18:45



英·日, 기술발전 앞당기려  
데이터·콘텐츠 학습 허용  
저작권법 침해 적용 안해  
국내서도 면책권 법추진에  
언론사·예술가단체 등 반발



안녕하세요 chatGPT는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학습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OpenAI의 ChatGPT입니다. 저는 온라인의 다양한 웹사이트와 문서들을 통해 학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특정한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직접적으로 학습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저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성하는 답변은 다양한 주제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언론사의 특정한 기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 기사 학습에 대한 챗GPT의 답변 <출처 - 챗GPT 화면 갈무리>

# DISCUSSION : TDM 입법

---

- 1) TDM 입법의 필요성이 없음: 공정이용 조항의 활용으로 충분함.
- 2) 입법을 한다면 공정이용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저작권 권제한의 하나로 입법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인 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3) 2)와 같이 입법을 한다면, 반영하여야 할 사항: ① 목적제한[비상업적 목적의 사용(연구 및 개발목적)]+②적법한 접근(legal access))+③복제물 제3자 유출 금지+④저작물이용내역제공의무

## 공정이용에 대한 법조문 제안

- ① 이용자의 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이어야 하며,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i) 컴퓨터 데이터 분석
  - (ii)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 또는 녹화물 준비
- ② 이용자는 복제 대상 자료(이 조에서 "1차 복제물"로 부른다)에 적법한 접근 자격이 있을 것
- ③ 다음 각 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제물을 다른 자에게 유출(공중송신 등 방법을 불문한다)하지 아니할 것
  - (i) 값이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 (ii) 값이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 목적과 관련한 합동 연구 또는 조사
- ④ 이용자는 저작물 이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지식재산 MORE-전문가칼럼]새정부 정책과제로서 콘텐츠 강국 건설과 인공지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25. 7. 7. 9:21

URL 복사 +이웃추가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사용내역 공개

### 새정부 정책과제로서 콘텐츠 강국 건설과 인공지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법학박사)

#### 새정부 정책과제로서 콘텐츠 강국 건설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새 정부의 정책과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7일 오후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통령은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sup>1)</sup>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의지는 문화국가로서의 우리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적절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문화가 산업이 되고 경제적인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10대 공약 1순위로 ‘경제 강국 만들기’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하겠다고 했다.<sup>2)</sup> 기존에 우리나라는 별도의 법으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류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화산업의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하면 새 정부가 문화콘텐츠 분야를 산업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조로 잡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 콘텐츠 강국 건설을 위한 저작권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TDM 예외 조항의 입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TDM 예외 조항을 입법한 국가로 일본과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도 TDM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저작물은 다름의 경우 그 밖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유(享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 및 해당 이용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이 비향유적인 경우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이유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의도를 고려한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향유하거나 타인이 향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데, 향유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sup>3)</sup>

싱가포르 이런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과 구별되는 것은 합법적 접근(lawful access)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인공지능학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CDA(Computational Data Analysis)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에서의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사용에 대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미국식의 공정이용조항과 개별적인 학습용데이터 면책조항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식의 공정이용조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TDM입법을 검토함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그런데 이런 면책논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작물들이 무가치하게 보이도록 해서 안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은 양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의 특징,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적과 우리 산업이 처한 고유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이런 류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콘텐츠 강국 건설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의해서 보호되는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개

인공지능학습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중에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있고, 반면 저작권 및 다른 법률<sup>4)</sup>에 의한 보호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 별도로 권리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국가의 전제로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균형점을 발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권리자인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어떤 저작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정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용내역에 대한 공시는 균형점의 발견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주요 규제기관에서 제정한 AI에 대한 첫 번째 포괄적 규제이다. 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투명성 요건(transparency requirement)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는 사용목록을 규제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인 사용료를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학습 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수용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범용 등으로 나누어서 규제설계를 하고 있다.<sup>5)</sup> 그 결과 모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용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위험 인공지능(High Risk Artificial Intelligence)'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sup>6)</sup> 이는 공개의무와는 다른 표시의무(labeling obligation)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제6조가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간주하는 인공지능은 생체 인식, 법 집행 시스템, 교육 훈련 및 채용, 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사회 서비스,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선거, 소셜 미디어, 무기 시스템 등이다. 유럽연합 이 정의하는 고위험 인공지능(High-Risk AI)을 규정하는 제6조 1항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① 해당 AI 시스템이 안전 관련 제품의 핵심 부품이거나, Annex III(부속서 III)에 명시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우, ② 제3자 적합성 평가(Third-party conformity assessment)가 요구되는 경우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본다. 이런 경우로 생체인식 시스템<sup>7)</sup>, 법 집행 시스템에 대한 인공지능<sup>8)</sup>, 교육 훈련 및 채용에 대한 인공지능은 고위험 인공지능이다<sup>9)</sup>. 의료관련 인공지능,<sup>10)</sup> 자율주행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경우<sup>11)</sup>,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와 같이 국가의 공공기반인프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인공지능이다.<sup>12)</sup>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인공지능이다. 현대 전쟁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 미사일 등 다수의 자율형 무기가 사용된다. 이런 무기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고 공격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경우 인공지능 사용을 알리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여 저작물은 어떤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사용여부와 사용정도를 알리는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공지능학습의 경우 소송에서 증거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저작물의 인공지능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공개와 표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필요하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저작권이 물려서야 한다면서 TDM 예외만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저작권 기반의 콘텐츠 강국의 건설도 인공지능 산업 강국도 같이 병립할 수 있다.

# OPT OUT: 신중검토 (참조: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 판결)

- ① 독일 저작권법(UrhG) 제60d조 및 제44b조
- ② 프랑스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122-5-2조

등 개별 국가에서 TDM 면책 규정이 도입

Permalink: <https://openjur.de/u/2495651.html> (<https://oj.is/2495651>) [LG Hamburg](#), Urteil vom 27.09.2024 - 310 O 227/23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미지 분석 및 메타데이터 추출 행위가 §44b UrhG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서의 데이터셋 구축이 TDM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즉 자동화된 분석 혹은 패턴, 트렌드, 관계성 도출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동화 접근 및 다운로드 등 금지 조항(usage restriction)'이 §44b 3항의 옵트아웃(opt-out)에 해당하여 피고의 행위를 저작권 예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원은 이 이용금지문구가 충분히 명확하고, 사람/기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인 비교적 단순한 영어 문장이라면, 기계판독가능한(machine-readable) 고지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충족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



**감사합니다 .**

[lawntech1@naver.com](mailto:lawntech1@naver.com)